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1
----------	-----

제안년월일 : 2022년 11월 3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규정 내용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고, 회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며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함께 반영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신고 서식을 삭제 및 일부개정(안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및 제10조의3, 제14조)
- 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준하여 각 호 규정 정비(안 제7조)
- 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임사항 미규정 사항 반영(안 제9조)
- 라. 2021년 서울특별시 조례상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 중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개선권고안 일부 반영(안 제18조)

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개정(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
은 법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중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

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4조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의원”으로, “직원”을 “직원 및 직무와 관련한 제3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 단서 중 “10만원”을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나목 전단 중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를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

고, 같은 비고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9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의</u> <u>원은 안전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u> <u>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상</u> <u>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u> <u>실을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서면</u> <u>(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u>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u> <u>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u> <u>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u> <u>우</u> <u>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u> <u>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u> <u>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u> <u>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u> <u>경우</u> <u>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u> <u>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u> <u>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u> <u>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u> <u>·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
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
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
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
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
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
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
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의원 임

<삭 제>

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 활동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

<삭 제>

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하
“시 산하기관“이라 한다)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
관계사업자가 시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서울특별
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
원회 · 심의회 · 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
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
회 등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

<삭 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는-----

가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항의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의 범위를 상임위원회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

-.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제9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상임위원회별 직무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삭 제>

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서울특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 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

1. (현행과 같음)

2. -----

----- 전가(轉嫁)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가. 서울특별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서울특별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항을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략)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삭제>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

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
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
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
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
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
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
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
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

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성희롱 금지 등) ①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의회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제18조(성희롱 금지 등) ① -----
의원 -----
----- 직원 및 직

② (현행과 같음)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신 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별지 제4호서식]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 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지 제12호 서식]직무관련자 등과 의 거래 신고서	<삭 제>
----------------------------------	-------